

■ 고시

-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및이용활성화사업관리규정

■ 부령

- 정보통신부현업관서의조직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령

■ 공고

- '96산업기술개발용자사업지원지침

◎ 정보통신부고시제1996-14호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및
이용활성화사업관리규정

(고시일 96. 2. 21)

제 1 조(목적) 이규정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26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5 조와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및 이용활성화사업(이하“초고속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중 출연금으로 시행하는 초고속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초고속사업에 관하여 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수행자”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이하“전담기관”이라 한다) 또는 전담기관과 공동으로 초고속사업을 수행

하는 기관으로부터 초고속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사업비”라 함은 장관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초고속사업을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기금에서 출연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사업기간”이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이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과 체결하는 협약서에 따라 초고속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제 2 장 전담기관의 업무등

제 4 조(전담기관의 업무) ①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고속사업의 세부사업계획 수립
2. 초고속사업에 관한 수요조사 및 이용계획 수립
3. 초고속사업의 자금집행계획수립과 집행 및 관리
4. 초고속사업수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5. 기타 초고속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초고속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초고속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이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 5조(세부사업계획 등의 보완 또는 수정)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제 4조 제 1항제 1호 내지 제 3호의 계획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장 협약체결등

제 6조(협약체결)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초고속사업의 세부사업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한다.

② 장관은 초고속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초고속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업기간 종료전에 다음년도 초고속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착수하게 할 수 있다.

제 7조(협약의 변경) 장관은 초고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출연시기 및 사업기간등의 협약사항 또는 사업수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8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2. 당해 협약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장관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귀책사유 및 정도에 따라 이미 출연한 사업비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초고속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시설물등을 환수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 및 초고속사업책임자에 대하여 초고속사업에의 참여제한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장 사업수행등

제 9조(분기별 추진실적등의 제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초고속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초고속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조(초고속사업 수행결과보고서)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자체평가서를 포함한 초고속사업의 수행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조(초고속사업의 평가)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초고속사업수행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초고속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시기 및 기준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할 수 있다.

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은 초고속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성할 수 있다.

제 12조(사업수행결과 발표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과 협의하여 초고속사업의 수행결과를 발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이 저작물을 발간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명의로 하고 사업비로 수행한 결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13조(지적재산권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초고속사업의 수행결과로 취득한 지적재산권(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을 소유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 자금을 부담하여 공동수행한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적재산권의 이용활성화 및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요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재산권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수행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당해 초고속사업에 직접 참여 또는 장비등 시설물을 제공한 기관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기관
4. 장관이 지적재산권의 이용활성화 및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계약 및 징수조건등에 관하여 지적재산권을 공유하는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전담기관의 장이 지적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정하는 각호의 용도에 초고속사업을 수행한 직원등에 대한 인센티브등을 추가할 수 있다.
- ⑦ 비영리법인인 사업수행자가 초고속사업을 수행하여 취득하는 지적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자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1항의 단서 및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 전담기관의 장이 초고속사업의 수행결과로 취득한 장비등 시설물에 대한 소유, 처분, 관리등에 대하여는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7 장 사업비 운용

- 제 14 조(자금집행계획수립) 전담기관의 장이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 15 조(사업비의 출연) 장관은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한다. 다만,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시기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16 조(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정하는 매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등을 준용하여 사업비의 산정기준등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를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 17 조(사업비 결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종료후 2개월이내에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자체감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은 제 8 조 및 제 19 조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제 18 조(사업비의 사용잔액등의 처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잔액 및 이식등(이하 “사용잔액등”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계정에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사용잔액등을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다음년도 사업비의 추가·증액
 2.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당해년도 또는 다음년도의 다른 사업비
 3. 전담기관의 초고속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비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잔액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다음년도 또는 다른 사업비와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 19 조(사업비의 이체) ① 장관은 초고속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전담기관으로부터 변경후의 전담기관으로 사업비를 이체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이체한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집행내역등 그 내용을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20 조(사업비의 사용특례) 장관은 초고속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분야별 사업비의 일부를 다른 분야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보 칙

- 제 21 조(감독)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초고속사업에 대하여 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22 조(위반사항 제재) 장관은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초고속사업에의 참여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23 조(비밀준수사항) 전담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 또는 공인회계사등 초고속사업에 종사한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공표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24 조(다른 규정의 준용) ①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 중 초고속사업에 대한 출연금

의 운용·관리 및 회계등에 대하여는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관리를 준용한다.

② 초고속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사업등 초고속사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관리를 정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의 각종 서식은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 25 조 (전담기관의 세부지침)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초고속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수행된 초고속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수행된 초고속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통상산업부공고제1996-26호

'96산업기술개발용자사업지원지침

(공고일 96. 3. 5)

1. 1996년도 지원규모 : 2,545억원
 - 가. 시제품 개발사업 : 2,000억원
 - 나. 첨단기술 개발사업 : 545억원
2. 용자대상
 - 가. 시제품 개발사업
 - 1) 통상산업부장관이 자본재산업육성과 관련 고시한 전략품목의 개발사업
 - 2) 통상산업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5개년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고한 과제의 개발사업
 - 3) 통상산업부관이 공고한 공업기반기술개발과제의 개발사업
 - 4) 섬유신기술 및 소재관련 기술개발사업
 - 5) 산업디자인 기술개발사업
 - 6)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개발사업

※ 공동개발사업은 2개 이상의 업체가 민간생산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또는 산업기술연구소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첨단기술 개발사업

-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통상산업부고시 제 1994-36호)에 해당하는 기술 개발사업
- 2)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후속 개발사업
- 3)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단기술 개발사업
 - ※ 공동개발사업은 참여율 2순위 업체가 1순위 업체 사업비의 50%이상을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1개 이상 업체는 동일 계열기업군 소속이 아니어야 함.

3. 용자조건 및 한도

구	분	대출금리
산업기술개발자금(재특)		연리 7%
용자기간		용자비율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		소요자금의 80%
과제당 한도액		

- 시제품 : 20억원

- 첨단제품 : 10억원

※ 자본재산업 전략품목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30억원까지 지원

4. 용자 취급기관

가. 시제품 개발사업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생산기술연구원, 국가공단협회

나. 첨단기술 개발사업 :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공업진흥회(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부문에 한함)

5. 용자신청

가. 신청기간 : 취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신청·접수기관 : 상기 용자 취급기관

다. 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과 자

금대여약정을 체결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라. 신청서류

- 1)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취급기관 소정양식) 2부
- 2) 기타 참고자료

6. 지원 우대조치

가. 시제품 개발사업

-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를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동종업계의 공동개발조직이 구성된 품목
- 자본재기술개발관리단이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품목
- 생산자 단체에서 표준화 또는 공용화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나. 첨단기술 개발사업

- 연구개발 투자비율의 총매출액의 3%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가 설치된 중소기업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되며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후속적으로 실용화개발하는 경우

7. 신청자 의무사항

가. 대출완료기한

자금을 융자지원 반기로 확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임하는 자의 기한연장조치가 없는 한 확정통보후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수수료 납부

융자사업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취급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 목적외 사용금지

융자사업자는 그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받은 때에 지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라. 구분계리

융자사업자는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마. 보고의무

융자사업자는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령 제20조의 규정된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내에 취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부령 제20호

정보통신부현업관서의조직및 사무분장규칙중개정령

(공포일 96. 3. 4)

정보통신부현업관서의조직및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창구과"를 "우편영업과"로, "환대체과"를 "금융영업과"로 한다.

제3조제4호중 서울양천우체국 다음에 "서울강서우체국"을 복인천우체국 다음에 "서인천우체국"을, 마산우체국 다음에 "마산합포우체국"을, 대전유성우체국 다음에 "대전대덕우체국"을, 서광주우체국 다음에 "광주광산우체국"을, 복대구우체국 다음에 "대구달서우체국" 및 "대구성서우체국"을 각각 신설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창구과"를 "창구과(서울중앙우체국은 우편영업과)"로 하고, 동항 단서 및 제4항중 "환대체과"를 "금융영업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우편집중국 : 업무1과·업무2과·업무3과·기술과 및 관리과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업무1과의 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서울우편편집중국 : 통상우편물의 구분·발송에 관한 사항
- 2. 동서울우편집중국 : 소형통상우편물 및 특수취급우편물의 구분·발송에 관한 사항

② 업무2과의 분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서울우편집중국 : 특수취급우편물 및 소포우편물의 구분·발송과 우편물의 접수 및 운송에 관한 사항
- 2. 동서울우편집중국 : 대형통상우편물 및 소포우편물의 구분 발송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업무3과는 우편물의 접수 및 운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